



**디에스디 상호**

(137-889)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 스포타임 5층

전화 02-570-0035

FAX 02-570-0025

문서번호 : DSD삼호제2013-0264호

시행일자 : 2013년 05월 09일

수신처 :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담당자

제목 : 용인수지 '광교산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업무협조 요청의件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분양예정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사업지구 1-2블록' 소재 '광교산자이아파트'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을 요청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사업지구 1-2블록
- 세대 수 : 445세대중 일반특별공급 32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3년 05월 29일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일 : 2013년 06월 03일 (예정)
- ※ 상기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일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나. 업무협조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일 : 특별공급 접수 전일까지
- 대상자 통보 불능시 : 특별공급 신청일까지 확인서(추천서)발급
- 대상자 배정회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 광교산자이 건본주택  
(담당 연락처 : T)031-715-3573, F)

첨 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끝.

**디에스디삼호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윤권**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도시개발사업지구 1-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5층, 총7개동, 4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10% 이내)

•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청약예금 :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 제3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세대

(단위 : ㎡/세대)

구 분	78	84A	84B	84C	84D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6	16	6	2	2	32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 배정될 수 있음]